

의안번호	2114887
의 퇴 인	성일종의원
회 답 일	2022. 03.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안 제38조)

-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¹⁾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전단)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현행법 제26조(세제 및 자금지원)제2항²⁾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³⁾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그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삭제 <2015.6.22>

나. 삭제 <2015.6.22>

다. 삭제 <2015.6.22>

에 따른 각급 학교가 설립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⁴⁾ 발생 가능

- 기업도시 현황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자료 1] 기업도시 추진개요, [참고자료 2] 기업도시개발 관련 지원 현황 참조

[표 1] 기업도시 개발 현황

유 형	도시	개발구역 지정	현 황	소관부처
지식기반형	충주	2007.04	준공(2012.12)	국토부
	원주	2007.04	준공(2019.09)	
산업교역형	무안	2009.01	지정해제(2013.2)	
관광레저형	태안	2006.12	개발중	문체부
	무주	2007.09	지정해제(2011.1)	
	영암 해남	(삼호지구) 2009.10	개발중	
		(구성지구) 2010.1	개발중	
		(삼포지구) 2010.10	개발중	

주: 1.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 영암·해남은 당초 전경련주도 1개 기업도시로 검토되었으나, 전경련 측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 → 전남도가 3개 지구로 분리하여 사업자를 모집·개발하게 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입지하게 될 외국교육기관의 수, 규모 및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지원 내역·규모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함

$$\text{추가재정소요} = \sum_t \sum_i (\text{외국교육기관}_{it} \times \text{지원액}_{it})$$

- 이때 t = 추계기간

i = 각 급 외국교육기관

-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향후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입주하게 될 외국교육기관 및 이에 대한 지원 내역·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참고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 대구 경제자유구역에 2개 외국교육기관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이하 생략)

(유초중등)이 설립·운영 중이며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및 공동교육시설 조성·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음

－ 외국교육기관 현황 및 지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3] 외국교육기관 현황 및 지원 항목 참조

□ 따라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참고자료 1] 기업도시 추진개요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기업도시는 일반적으로는 민간기업 주도 투자·개발하는 도시를 의미
 - (법 제2조)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 주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 전국경제인연합 건의(2003.10)를 계기로, 기업 투자의욕 고취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공포, 2004. 12)
 - 당초 산업교역형(제조업·교역), 지식기반형(연구개발), 관광레저형(관광문화)으로 구분 → 유형구분은 2015.06 폐지(기 지정 관광레저형은 종전규정에 따름)
- 법 제정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선정(2005.07~08월)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2개 준공·2개 개발중·2개는 지정해제

<6개 시범사업 구역>

유형	도시	개발구역 지정	현황	소관부처
지식기반형	충주	2007.04	준공(2012.12)	국토부
	원주	2007.04	준공(2019.09)	
산업교역형	무안	2009.01	지정해제(2013.2)	
관광레저형	태안	2006.12	개발중	문체부
	무주	2007.9	지정해제(2011.1)	
	영암 해남	(삼호지구) 2009.10	개발중	
		(구성지구) 2010.01	개발중	
		(삼포지구) 2010.10	개발중	

* 영암·해남은 당초 전경련주도 1개 기업도시로 검토되었으나, 전경련측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 → 전남도가 3개 지구로 분리하여 사업자를 모집·개발하게 됨

- 국토부는 관광레저형 소관부처인 문체부와 협력하여, 기업도시 사업현황 점검·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해 옴
 -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원
 - 제정 당시 기업도시법은 특혜시비 우려로 각종 규제가 강한 편이었는바,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해 옴 : (2008) 기반시설비 지원확대, (2009) 직접사용 기준 완화, (2010) 환지방식 도입, (2017) 원형지개발 허용·매립면허 양수가격 특례, (2015) 수도권외 광역시 입지제한 폐지, 최소개발면적 축소, 개발이익 환수율 인하, 매립지소유권 취득가격 특례, ('16) 토지수용 재결기간 연장 특례 등

[참고자료 2] 기업도시 관련 지원 제도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지원

-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 개발구역 주 진입도로 건설비에 대한 국고 보조(50%) (법 제34조)
-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 법인세 3년 50%, 2년 25% 감면, 지방세는 50%범위 내 조례 위임
 - 각종 부담금 감면 (법 제25조) : ①개발부담금 면제, ②농지보전부담금 감면(농업진흥지역 밖 50%), ③대체초지조성비 감면(50%), ④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감면(준보전산지 50%), ⑤교통유발부담금 면제, ⑥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 자금조달 용이성을 위해 토지상환채권 발행 및 선수금 수령 가능
-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법 제13조)

□ 행정절차 간소화

- 실시계획 승인 시 39개법 82개의 각종 인·허가 일괄 처리
- 관광중심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
 - 카지노업 허가 특례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 또는 대여 가능

□ 입주기업 수요 확보를 위한 지원

- 신설·창업기업 조세 감면
 - 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지방세는 50%범위 내 조례 위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 토지매입가액(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설비투자금액(중기 24%, 중견기업 19%, 대기업 11%) 보조금 지원 (국고보조비율 최대 75%)
 - 기업도시개발 구역 지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지원우대 지역에 해당되어 지원비율이 일반 지역 대비 최대 10%p 상향
- 국·공유용지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게도 20%의 범위 내에서 국·공유 용지 임대료 감면이 가능

[참고자료 3] 외국교육기관(유초중등) 현황 및 지원 항목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제출자료

□ 9개 경제자유구역 내 2개교

○ 외국교육기관 현황

현황	지역	구분	기관명	운영개요
개교	인천	유초 중고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 규모 : 유초중고 2,080명 ■ 개교 : '10.9.7
	대구 경북	유초 중고	대구국제학교 (美 Lee-Academy)	■ 규모 : 유초중고 680명 ■ 개교 : '10.8.13.

□ 지원 항목 (국비와 지방비 매칭)

- (초기운영비) 신청 시(개교 후 1년간 운영 적자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 － 교직원 이주·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 비용(국비 연간 3억원): 최대 6년간 지원 가능(국50%, 지50%)
 - － 인천, 대구는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비) 총사업비 범위에서 매칭 비율에 따라 지원(국25%, 지25%, 민50%)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장	이현경
추계세제분석관	이택균
연락처	02-6788-3746
	69potato@nabo.go.kr
